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3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  
발 의 자: 임만균, 강동길, 서상열,  
서준오, 성흠제, 이병도,  
이상훈, 이소라, 이용균,  
정준호, 최기찬 의원(11  
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지하철출입구등을 사유지내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도 도시계획조례 신설하였으나 활성화가 저조하여 보도상에 지하철출입구등 지장물로 인해 보행환경개선이 시급함
- 그러나, 기존 조례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여 출입구 면적 외 연결통로(지하철승강장에서 민간건물 또는 토지내 출입구까지 설치)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하철출입구등이 민간토지 내에 설치될 때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함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지내”를 “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”로, “산식”을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.
  - 가. 대지에 설치할 경우 : 용적률 × (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/ 대지면적) 이내
  - 나. 건물에 설치할 경우 : 용적률 × (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/ 건물연면적) 이내
  
2. 지하철출입구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(價額)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. 이때, 통로의 설치비용 등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19조의2를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~⑰ (생 략)</p> <p>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·환기구·배전함등(이하 “지하철출입구등”이라 한다)을 건물 또는 <u>대지내</u>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<u>산식</u>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대지에 설치할 경우 : 용적률 × (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/ 대지면적) 이내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<u>건물에 설치할 경우 : 용적률 × (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/ 건물 연면적) 이내</u></p> <p>⑲~㉓ (생 략)</p>	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~⑰ (현행과 같음)</p> <p>⑱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</u>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대지에 설치할 경우 : 용적률 × (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/ 대지면적) 이내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건물에 설치할 경우 : 용적률 × (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/ 건물 연면적) 이내</u></p> <p>2. <u>지하철출입구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(價額)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. 이때, 통로의 설치비용 등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19조의2를 따른다.</u></p> <p>⑲~㉓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3101600000026

## 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임만균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6.

회신일 : 2023.10.18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##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#### 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제18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	☎ 02-2180-7953
	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**